

## 1. 개정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(중앙통제단의 기능)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전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하여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(안 제12조의2)

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.

- 1) 해당 시·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
- 2)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

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나.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0조의3)

-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,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

다. 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·개선

- “중대·소대·분대·팀”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

- 중증도 분류표 개선(양면→단면) 등 별표 및 서식 개선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119구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\* 의견서 보내실 곳

- 주 소 :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조과(311호)

- 전화번호 : 044-205-7612(팩스번호 : 044-205-8986)

- 이 메 일 : jkb0119@korea.kr

## 4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참고하시거나, 소방청 119구조과(044-205-76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문화재청공고제2020-267호

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84-9번지 896㎡를 천연기념물 제478호 「장성 단전리 느티나무」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9월 2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공 고 명 : 「장성 단전리 느티나무」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예고

2. 예고사항

가. 대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제478호 「장성 단전리 느티나무」

○ 소재지 :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번지 외 5필지

나.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: 1필지 896㎡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번 면적 (㎡)	지정 면적 (㎡)	소 유 자	
						성명	주소
1	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	284-8	답	896	896	황정선	울산 동구 옥류로 92 벽산유토피아 101-1108

다. 예고사유

○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기 위함

3. 예 고 일 : 관보 공고일

4. 예고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5. 특기사항 :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(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)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연락처

가. 문화재청

○ 주 소 : (우)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

○ 연락처 :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(전화) 042-481-4990(전송) 042-481-4999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cha.go.kr>, 전자메일 [tn2077@korea.kr](mailto:tn2077@korea.kr)

나. 지방자치단체

○ 주 소 : (우)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

○ 연락처 : 전라남도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(전화) 061-390-7224, (전송) 061-390-7577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jangseong.go.kr>, 전자메일 [swseo1213@korea.kr](mailto:swseo1213@korea.kr)

## ●산림청공고제2020-344호

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일

산 립 청 장

###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나무병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기업진단 보고서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